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15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7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2024.06.19.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상정ㆍ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 토론ㆍ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9.) 상정·축조심사ㆍ의결(대안반 영폐기)
	제934호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2024.06.25.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2.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제5948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024.11.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회부(2024.12.0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법안심사제1소위(2024.12.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2. 9.)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 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상책임) ①・② (생 릴	·) 제2조(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
	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
	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u>있다.</u>